

문서번호	BSKS-3-1-85
제정일자	2014.05.23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/4

2014.05.23.제정 2019.07.16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07.29.개정 2022.08.30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6조의1에 의하여 부산경상대학교(이하"본 대학"이라 한다.) 명예겸임교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자격 및 기준) 명예겸임교수 자격은 본 대학 겸임교원 임용규정에 준한다.(단,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3호에 의거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기능이 탁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.)
- 제3조(절차) 명예겸임교수 임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해당 학과장은 추천서(별지서식 제1호)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추천한다.
 - 2. 대학의 장은 명예겸임교수 추천서(별지서식 제1호)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교원인사위 원회에 심의 요청한다.
 - 3.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회의록과 명예겸임교수 추대 동의서(별지서식 제2호)를 작성한다.
 - 4.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명예겸임교수를 임명한다.<개정 2019.07.16., 2020.09.25. 2022.02.28., 2022.08.30.>
- 제4조(임용기간) 명예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<개정 2022.07.29.>
- **제5조(재임용)** 명예겸임교수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 후 재임용하다.
- **제6조(복무)** ① 명예겸임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전공분야에 강의 및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. ② 명예겸임교수가 강의를 담당할 경우 주당 수업시수는 6시간 이내로 한다.
- **제7조(연구비 또는 강의료 지급)** ① 대학의 장은 명예겸임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명예겸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사료 지급은 겸임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.
- 제8조(자격철회) 명예겸임교수가 본교의 명예 또는 명예겸임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



문서번호	BSKS-3-1-85
제정일자	2014.05.23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2/4

이 있을 때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겸임교수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소급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85
제정일자	2014.05.23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3/4

[별지 제1호]

명예겸임교수 추천서					
성명		성명(한자)			
주민번호		소속			
퇴직일자		퇴직사유			
본교 근속년수		퇴직시 직위명			
	포상 및 수상경력				
		내 역			
종류					
분야					
교육, 학술 및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 사항					
	년 역	일 일			
추천관 직	위	성명	(인)		
 확 인 관 직	[위	성명	(인)		



문서번호	BSKS-3-1-85
제정일자	2014.05.23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4/4

[별지 제2호]

명예겸임교수 추천동의서			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
주 소				
소 속				
직 위				
사 유				
	교원인사위원회	위 원 장	(III)	
		부위원장	(FI)	
		위 원	(FI)	
		위 원	(H)	
		위 원	(H)	
		위 원	(FI)	
	년	월 일		